

생활 속 법률이야기

오늘의 생활 속 법률이야기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명예 퇴직 이후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 이후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까요?

집배원이었던 A씨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A씨는 면직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이 A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했고, 우정사업본부장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A씨는 “공무원 신분이 종료된 뒤 수사 사실이 통보된 만큼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원심은 면직의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라는 잠정적 사유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원고에게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미 면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하였고, 그에 피고 우체국장은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특별승진)취소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명예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의 기득권과 신뢰를 한층 더 크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예퇴직일 이후에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취소될까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9. 18.>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 <2013. 12. 11.>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4. 22., 2013. 12.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 26.]

제3조 ③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적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은 언제 가능할까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 ③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에 관하여 관례는 『법령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